

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(level-up) 및 확장(scale-up)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 보육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<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> 사업을 추진합니다.

예술분야 혁신적 사업, 전문성 및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겸비한 **예술분야 창업기업***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*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?

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(업력 7년 이내(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))을 모두 포함

*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 및 제 36차(개정 22.9.27.), (시행 23.3.28.)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
* 연예, 영화, 만화, 건축, 출판, 어문, 게임,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

□ 공모개요

○ (공모명)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공모

○ (지원목적) 확장 가능성 있는 창업기업의 창업 보육 및 외부자원 연계 지원을 통한 성장기 예술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 및 혁신 성장 견인

○ (지원대상) 업력 3년 이상~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

○ (협약기간) 2023년 4월 ~ 11월 (약 8개월)

○ (선정규모) 30개사 내외

○ (지원내용)

- (자금지원) 사업화 자금 70백만원 ~ 150백만원 지원(자부담 10% 필수)

* 기업별 지원금은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

* 총 사업비(100%) = 국고보조금(90%) + 자부담금액(10%) (총 사업비 정산 필수)

* 지원금 2회 분할교부, 중간평가 이후 2차 교부 진행

- (창업보육)

· 기업의 사업 유형 및 성장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 지원

· 기업별 전담 멘토링, 전문가 교육 및 심화 컨설팅* 등 지원

* 선정기업은 보육 프로그램 필수 참석이 원칙이며,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/ 비대면 운영 예정

- (자원연계) 투자상담회, IR 데모데이, 클라우드 펀딩, 기업협력 등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 지원 및 공공시장 진출 기회 제공
- (네트워킹) 유사 기업, 투자자, 대기업 간 정보·사례 공유 및 협업 도모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

○ (성과평가)

- (성과관리) 지원사업 전, 중간, 종료 이후 목표 설정 및 측정
- (중간평가) 성과목표 달성도, 성실참여도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
- (최종평가)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금 지급

□ 신청대상 및 요건

▶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“창업도약”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단,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(업력 등)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.
'20~22년 예술기업 공모전, '19~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: 서로(SEORO)

○ (신청대상)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예술기업

* 예술작품 창·제작, 일회성 공연·전시·행사·해외투어, 단순·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

○ (신청요건) 공고일 기준,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

-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이 **2016년 2월 8일 ~ 2020년 2월 8일** 사이인 기업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 - ※ 단, 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에 의거,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(동종전환),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으로 판단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**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원기간(협약체결일 ~ 2023년 11월 30일) 내에 법인으로 전환 필수**

*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 (산출물, 공통·특화 목표, 예술 생태계 기여도)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

○ (우대사항) 아래 해당되는 경우, 1차 심사 시 가산점(각 2점) 부여

-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
- ② 19년~22년 예술공모전(예비, 초기, 성장)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(SEORO)지원사업(시작, 세움, 성장)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(팀)(IR데모데이, 투자유치대회, 임팩트투자유치대회)
- ③ 21년~22년 KOPIS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수상기업(팀)
- ④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지역)외 지역인 기업
- ⑤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
* 1983년 2월 9일 이후 출생자,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해도 가능
- 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

○ (신청 제외 대상)

- ① 고유번호증·면세사업자 신청 불가
- ② 사업자등록 개시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이 아닐 경우
-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<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공모, 예술분야 창업 특화(ESG) 지원 공모,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참여기업 공모>와 중복 신청 불가(심사대상 제외)
-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- 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-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-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
- 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-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⑤항의 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- 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- 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- ⑥ 창업기업이 휴·폐업 중인 경우
-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
- ⑧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⑨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갬블링·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,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
- ②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③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기업)

○ (지원 제외 대상)

- ① 2023년 타 중앙부처, 자치단체,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신청 가능하나,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.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반납조치되며, 이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(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)
- ② 단,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완료(협약 종료) 또는 3개월 이내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함
- ③ 창업공간지원,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, 바우처 지원,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(선정 시 집행 중복 불가)

□ 사업 수행 시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중도포기 시 향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(사업취소),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협약서 및 「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」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3조의 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- 총사업비(국고보조금+자부담) 지출마감 기한을 준수해야 함
 - 집행가능기간 : 교부일 ~ 2023년 11월 30일(목)까지
 - 제출서류 : 사업종료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 - *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
 - * 사업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
- (신청 시)
 -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, 접수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
 -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,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 -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
- (사업수행 시)
 -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%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
 -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육성기관과 협의한 후 교부 예정임

-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한 보조금, 자부담 집행 필수임
 - 사업 선정 이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,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함
 - 사업기간(협약기간)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가능함
 - 교부 이후에도 신청 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이 있을 경우 보조금 반납 조치함
 -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 -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(자부담 포함)은 불인정될 수 있음
- (사업 종료 후)
-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·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, 조사, 정보 제공 등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신청 · 접수방법

-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3년 3월 10일(금) 15:00까지
 - * 접수마감일 이후 최종선정 수의 1.5배 미만 접수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- (신청방법)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에서 온라인 제출
- (제출서류)

제출서류		비고
필수	①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
	② 지원신청서 양식(HWP) 1부 * 서명기입 등으로 PDF변환 할 경우 HWP, PDF 각 1부 제출	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
	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	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(법인만 해당) * 말소포함, 전체페이지 제출	
	⑤ '21년~'22년 재무제표 각 1부 * '22년 재무제표 제출불가 시, '22년 기준 수지계산서 작성하여 제출 (서식참조)	
	⑥ 대표자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 * 발급방법 (국세청)홈택스-민원증명-사실증명신청-사실증명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신청	
선택	① 기타 지정·인증서, 상장 등 우대사항(3p 참고) 증빙자료	
	② IR(기업소개 및 투자제안서), 포트폴리오 등 (표지 포함 각10p 이하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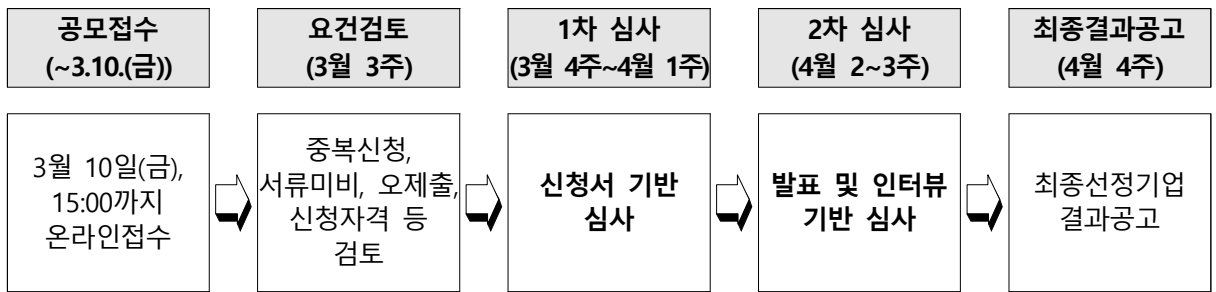
- * 지원신청서 및 수지계산서 양식은 공고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
- *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은 **최근 3개월 이내** 발급서류로 제출

○ (주의사항)

- 접수마감(23. 3. 10.(금), 15:00까지) 기한 내 e나라도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(15시 이후 입력 불가)
 - * e나라도움 시스템 특성상 신청서 작성,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(15:00)이 되면 등록 및 완료 불가함
-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완료 바람
- 이메일, 우편,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
 - *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: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, 장애신고 등 문의

□ 심사 및 선정

○ (심사일정) 2023년 3월 3주 - 4월 4주(예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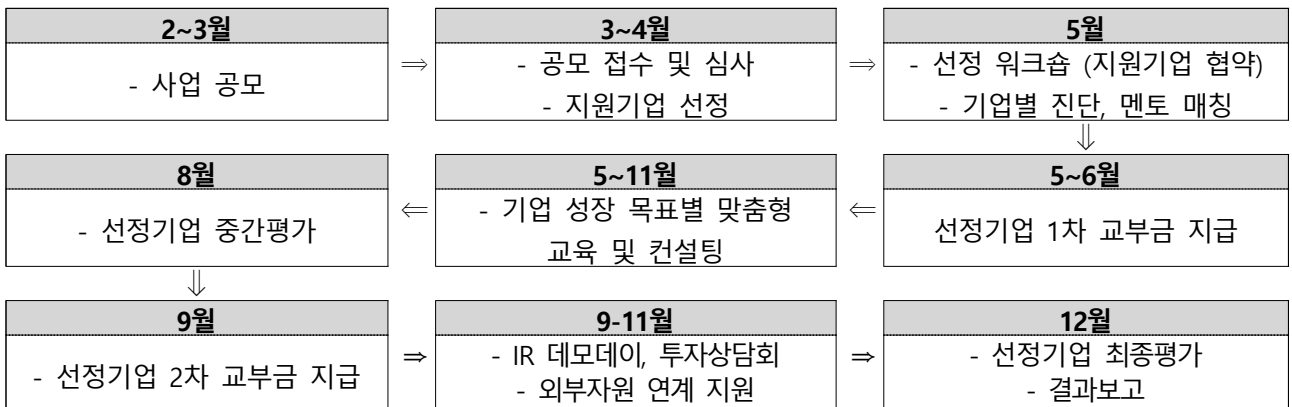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○ (심사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심사

※ 2차 심사의 경우 1차 선정기업 대상으로 심사방법 별도 공지 예정

○ (심사기준) 사업성, 혁신성, 전문성, 확장 가능성, 예술분야 기여도 등

□ 사업운영 일정

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

- (문의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성장지원팀
- (문의방법)
 - (유선) 02-708-2295, 2291
 - (이메일) startup@gokams.or.kr
 - * 전화문의 가능 시간: 평일(월~금) 10시~17시 (점심시간 12시~1시 제외)

- ※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※ 본 사업은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
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.
(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)
- ※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, 특허권,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
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, 추후 문제 발생시 지원
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※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
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으며 지침 및
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